



서울특별시 중구



수신 서울특별시시장(교통정보과장)

(경유)

제목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알림(서울시 교통정보과 통행관리 시스템 구축)

1.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-1342(2019.03.20.)호 관련입니다.
2.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제1호 「승례문」 주변 '자동차 통행관리시스템 구축'을 위하여 현상변경 신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허가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허가받는 자 : 서울특별시시장(교통정보과장)

나. 허가사항 : 통행관리시스템(지주 및 카메라)구축 3개소(최고높이 9.5m)

3. 아울러, 위 허가사항 이행 시 「문화재보호법」 제40조(신고사항)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현상변경 착수 및 완료 신고서를 15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 임 :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 공문 및 허가서 각 1부. 끝.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주무관	이주희	문화재시설관리 팀장	김육진	건축과장	03/22 이기봉
-----	-----	---------------	-----	------	--------------

협조자

시행 건축과-5527 (2019.03.22.) 접수 교통정보과-4488 (2019.3.22.)
 우 04558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(예관동) / http://www.junggu.seoul.kr
 전화 3396-5842 /전송 / jh0719@junggu.seoul.kr / 부분공개(5)



문화재청

문화재청

보다 나은 문화재청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송례문 주변 건축행위 등 허가 통지(자동차 통행관리시스템 구축-서울특별시)

1. 관련문서

○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현상변경 신청서(문화재청접수번호:201903000068)

2. 서울시 중구 소재 국보 제1호 「송례문」 주변 ‘자동차 통행관리시스템 구축’ 관련 건축행위(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) 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.

가. 허가받는 자 : 서울특별시(교통정보과장)

나. 허가사항 : 통행관리시스템(지주 및 카메라) 구축 3개소(최고높이: 9.5m)

붙임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(국보 제1호 송례문, 통행관리시스템 구축) 1부. 끝.

서울특별시



수신자 서울특별시(역사문화재과장),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문화관광과장)

주무관 이세훈 행정사무관 유철 유형문화재과장 03/20 박희웅

협조자

시행 유형문화재과-1342 (2019.03.20.) 접수 문화관광과-7036 (2019.3.21.)
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, (둔산동) / www.cha.go.kr
전화 042-481-4918 /전송 042-481-4939 / labofacd@korea.kr / 공개

국가지정(등록)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

허가번호 : _____

허가받는자	성 명 서울특별시		
	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번지 2호		
대상 문화재	종 류 국보	지정(등록)번호 제1호	명 칭 승례문
	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40 (남대문로4가)		
허가 사항	개 요 승례문의 현상변경신청(통행관리시스템 구축)		
	위 치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1번지 6호 (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98m)		
	내 용 - 서울 중구 소재 국보 제1호 승례문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자동차 통행관리를 위한 지주 및 단속카메라 설치 3개소(최고높이 9.5m)		
	기 간 2019-03-19 부터 2019-06-30		
허가 조건			
<p>「문화재보호법」 제36조·제56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·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·제3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(등록)문화재의 현상 변경 등을 허가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19년 3월 19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문 화 재 청 장 직인 생략</p>			

행 정 사 항

1. 이 허가는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2.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「문화재보호법」 제35조 및 제56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3.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「문화재보호법」 제40조 및 제55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(신고기간 경과 시 「문화재보호법」 제10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)
4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「문화재보호법」 제37조제1항(같은 법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)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
가.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
나.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
다.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
5. 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「문화재보호법」 제37조제3항에 따라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.
6.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.
7. 허가를 받은 자는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.
8.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항을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.